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2024 - 1602호

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건설정책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고 접수·처리 등) ① ~ ⑧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신고 접수·처리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건설정책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/u>